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73 호 2017. 1. 9(월)

고 시

제2017 - 2호 도로명주소 고시 1

공 고

제2017 - 17호 2017년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계획 공고 4

제2017 - 23호 조례의 제정과 폐쇄 청구권자 총수 공표 9

제2017 - 29호 남해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10

제2017 - 30호 남해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11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7 - 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84-4외 2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부 여

연번	중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685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84-4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등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246, 산269-1, 산269-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1505번길 100	20090427	흥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아리 160-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100번길 61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0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72-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257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91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2956-107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등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풍신리 1430-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로 1651-21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127-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양운로 139	20090427	남해읍에서 남해의 제2산이라 불리는 양운산으로 통하는 길임을 반영
8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웅소리 890-6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웅문사길 106-9	20090427	남서대로에서 웅문사까지 이어지는 길임을 반영. 웅문사는 보리암, 화방사와 함께 남해 3대 사찰임
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성리 168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2214번길 43-6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520-1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고실로 37	20090427	고현면(옛날에 한이 있던 고을)과 실전면을 잇는 도로임을 반영
1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07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양운로 140-7	20090427	남해읍에서 남해의 제2산이라 불리는 양운산으로 통하는 길임을 반영
1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075-4, 1075-7, 1077-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567번길 2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대정리 137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513번길 89-62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1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510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65-47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등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1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106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24번길 77-3	20090427	삼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536-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822-7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15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879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1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92-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1974-33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19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디조리 708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107-16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실전면 문의리 430	경상남도 남해군 실전면 강진로 909	20091023	실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1440-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788-10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등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산리 4-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138-22	20090427	창선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중심도로임을 반영
2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338, 산19-1, 산19-2, 58-1, 338-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316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2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50-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화진로965번길 33-1	20090427	화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폐 지

연번	중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075-4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567번길 2	2016.12.13	신축에 의한 출입구 변경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7 - 17호

2017년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계획 공고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9일

남 해 군 수

1. 사업목적

- 노령 및 장애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 도모

2. 지원근거

-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2009.1.1시행)

3. 지원기간 : 2017년 1월 ~ 12월

4.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10,400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 단,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

5. 대상자 결정

- 연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산정보험료 초과, 전출, 사망 등 변동 발생자를 제외하고 지원

6. 지원절차 및 방법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지원금 지급 신청에 의거 보험료 지원금을 공단으로 지급

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장	매월 보험료 지원 대상자 확정하여 보험료 지원금 지원신청	매월
남해군수	다음달 5일까지 보험료 지원금 지급	매월
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장	지원금 정산 보고	매월

7.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주민복지실(☎055-860-38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2008.12.09 조례 제1854호

(일부개정) 2015.07.06 조례 제2111호

(일부개정) 2015.10.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6 조례 제2111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 <개정 2015.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산한 산정액이 월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정"이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10,400원 미만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으로 한다. 다만, 「긴급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4조(공고) ① 군수는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군 홈페이지, 군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

제5조(보험료 지원 신청) 공단에서는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및 보험료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결정) 군수는 저소득주민 대상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8조(조사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조사실시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5.10.2.>

제11조(정산) 제6조에 따라 공단은 매월 납부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보험료에 대해서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6 조례 제2111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남해군 자치법규 정비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띠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23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및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연서 주민수)에 따라 2016. 12. 31. 현재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기 위한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1월 9일

남 해 군 수

19세 이상 주민 총수(단위 : 명)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단위 : 명)	비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영주권 취득후 3년경과자)		
40,003	39,986	17	800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남해군 공고 제2017 - 29호

남해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남해군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 기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1월 9일

남 해 군 수

(단위 :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비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40,003	39,986	17	5,715	청구권자 총수의 1/7 이상

남해군 공고 제2017 - 30호

남해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 기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1월 9일

남 해 군 수

■ 군 수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15/100 산정수	
계	40,003		6,001	4개 이상 읍·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남해읍	10851	401		
이동면	3762	401		
상주면	1544	232		
삼동면	3687	401		
미조면	2279	342		
남 면	3493	401		

서 면	2675	401	
고현면	3498	401	
설천면	2897	401	
창선면	5317	401	

■ 군의원

(단위 : 명)

지 역 선거구	읍면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20/100 산정수	
가선거구	계	13,526		2,706	각 읍·면별로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남해읍	10,851	136		
	서 면	2,675	136		
나선거구	계	6,395		1,279	각 면별로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고현면	3,498	64		
	설천면	2,897	64		
다선거구	계	8,799		1,760	1개 이상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 아야 함
	이동면	3,762	88		
	상주면	1,544	88		
	남 면	3,493	88		
라선거구	계	11,283		2,257	1개 이상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 아야 함
	삼동면	3,687	113		
	미조면	2,279	113		
	창선면	5,317	113		